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1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박홍근 · 임미애 · 장종태
이주희 · 김현정 · 한정애
황운하 · 김남근 · 김주영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거나 또는 어린시절 우리나라에 와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로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모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불법체류에 이들 아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2년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동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성·안정성 및 해당 아동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 23조의2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특칙)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18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6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나. 7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7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
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력 요건
을 충족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가족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체류자
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자 및 가족등에
관한 정보를 강제퇴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제3항 중 “제23조에”를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에”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이 제23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다.

제7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79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에”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에”를 “제23조 및 제23조의2에”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3조에”를 “제23조 및 제23조의2에”로 한다.

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범칙금의 연기·분할납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5년의 범위 내(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중 5년의 범위 내를 말한다)에서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할 범칙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범칙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 중 “그”를 “아동의 복리, 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출생하였거나 대한
민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3조의2(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특칙)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18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u></p> <p><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6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7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7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u></p> <p><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u></p>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미

성년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가족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자 및 가족등에 관한 정보를 강제퇴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 ② (생략)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제31조(외국인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에-----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
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

② (생략)

<신설>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 7. (생략)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
인이 제23조의2에 따라 체류자
격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다.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3조의2에 따라 체류자
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
람

3. ~ 7.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p>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p> <p>① (생략)</p> <p>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범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p>	<p><u>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아동의</u> <u>복리, 그</u>----- ----- -----.</p>
---	--